

## 『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』 개정 대비표

1. 대상약관 :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

2. 주요 변경 내용: ① 투자자예탁금 운영 및 이용료 지급기준 제정에 따른 일자 삭제 및 지침명 수정

② 회사가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사기이용계좌의 인출 및 이체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 제한이 가능하도록 개정(제 23 조제 1 항)

3. 시행 예정일 : 2024년 12월 19일

4. 개정 대비표

변경 전	변경 후	비 고
<p>제 1 조~제 10 조 &lt;생략&gt;</p> <p>제 11 조 ① &lt;생략&gt;</p> <p>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치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, 인터넷 홈페이지 (고객센터&gt;&gt; 상품자료실&amp;공시실 &gt;&gt;펀드자료실 &gt;&gt;공지사항 &gt;&gt; <u>외국집합투자증권(역외펀드) 매입신청 자금</u>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<u>&lt;신설&gt;</u> 지급기준 (<u>2016.5.25</u>)), 온라인 거래를 <u>&lt;신설&gt;</u> 컴퓨터 화면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.</p>	<p>제 1 조~제 10 조 &lt;좌동&gt;</p> <p>제 11 조 ① &lt;좌동&gt;</p> <p>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치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, 인터넷 홈페이지 (고객센터&gt;&gt; 상품자료실&amp;공시실 &gt;&gt;펀드자료실 &gt;&gt;공지사항 &gt;&gt;<u>&lt;삭제&gt;</u>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<u>운영 및 이용료</u> 지급기준 <u>&lt;삭제&gt;</u> ), 온라인 거래를 <u>위한</u> 컴퓨터 화면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.</p>	<p>투자자예탁금 운영 및 이용료 지급기준 지침제정으로 일자 삭제 및 지침명 수정</p>

<p><b>제 11 조 ③ ~ 제 22 조 &lt;생략&gt;</b></p> <p><b>제 23 조(거래제한) ①</b> 계좌가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,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<u>&lt;신설&gt;</u>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 1 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.</p> <p><b>제 24 조~제 28 조 &lt;생략&gt;</b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<b>&lt;별첨 1&gt;~&lt;별첨 5&gt;&lt;생략&gt;</b></p>	<p><b>제 11 조 ③ ~ 제 22 조 &lt;좌동&gt;</b></p> <p><b>제 23 조(거래제한) ①</b> 계좌가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,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, <u>해당 계좌의 인출·이체한도 축소</u>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 1 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.</p> <p><b>제 24 조~제 28 조 &lt;좌동&gt;</b></p> <p><u>부칙&lt;개정 2024. 12.19 &gt;</u></p> <p><u>제 1 조(시행일) 이 약관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 <p><b>&lt;별첨 1&gt;~&lt;별첨 5&gt;&lt;좌동&gt;</b></p>	<p>금융투자협회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2024.07.01 개정 반영</p>
--	--	---